

보험부채 할인율 단계별 조정에 대한 보험사 조기 적용 재량권 부여

전 현 진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ADS계리법인 상무



IFRS17 및 K-ICS가 도입된 지 어느덧 3년이 경과하였지만, 보험회사들은 여전히 K-ICS 등 지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독당국 또한 제도 도입 이후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신규 규정을 도입하거나 기존 규정을 수정하고 있다.

신제도 도입 당시 감독당국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을 유럽 등에 비해 다소 높게 설정하였다. 그러나 도입 이후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던 보험사의 자본과 손익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할인율에 기반한 높은 신계약 수익성은 계약체결 수당의 증가로 이어져 보험 영업 시장의 과당 경쟁을 야기했다. 이에 감독당국은 2024년 11월, 부채 할인율의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할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함으로써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고 재무지표의 신뢰성 증대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시장 금리가 하락 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사의 ALM(자산부채종합관리) 매칭을 위한 장기 채권 매입 확대는 장기 금리 하락 폭을 더욱 심화 시켜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5년 10월, 기존의 단계별 시행 일정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완화 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를 시행하여,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후순위채권 등 보완자본이 아닌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의 기본자본 중심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내놓았다.

대다수 보험사는 금리에 따른 자본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리위험액을 줄이기 위해 장기 채권 매입, 국채 선도거래 등 파생 상품이나 공동재보험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기본자본 K-ICS 비율이 도입된 만큼 보험사 입장에서는 요구자본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시장위험액 내 금리위험액이다. 대다수 자산은 시장금리로 평가되므로 자산평가액과 금리위험액이 보험부채 할인율과는 무관한 반면, 보험부채는 할인율에 따라 부채평가액과 금리위험액이 달라진다. 즉, 동일 시점 기준으로 보험부채 할인율이 변하면 부채평가액 변동에 따른 자본 변화 뿐만 아니라, 부채의 금리 민감도(듀레이션)가 변하여 금리위험액도 함께 변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금리위험액 관리를 위해 부채 할인율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연도별 하락 폭을 고려하여 ALM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 및 금리위험액의 변화보다, 부채 할인율 정책 변화로 인한 자본 및 금리위험액의 변동이 훨씬 크게 나타난다. 보험회사가 제도 변경에 따른 금리위험액을 관리하려면 종전보다 금리부자산을 늘리거나 기존 자산의 금리 민감도(듀레이션)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대다수 보험사는 과거 판매했던 저축성 상품의 해약 및 만기, 그리고 신규 저축성 상품의 판매 비중 감소로 인해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다. 이처럼 한정된 유동성 내에서 금리위험액을 관리하려면 매년 점진적으로 자산의 금리 포지션을 늘려야만 한다. 하지만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순차적으로 늘려야 할 포지션을 한 번에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자산 듀레이션이 부채보다 큰 회사의 경우 금리 위험액 관리를 위해 올해는 포지션을 줄였다가 미래에 다시 늘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듯 자본 부담 완화를 위해 연장된 단계별 시행 방안이 오히려 금리위험액 관리 측면에서는 보험사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만약 보험회사가 할인율 현실화 방안에 대해 감독당국의 타임라인을 그대로 따를지, 아니면 조기에 적용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갖게 된다면 어떨까? 과거 감독당국은 RBC 제도하에서 금리위험액 측정 시 보험계약의 최장 잔존 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때, 보험사가 희망하는 경우 일정과 관계없이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재량권이 부여된다면 보험회사는 자산·부채의 금리 포지션과 향후 금융 환경을 고려하여 더욱 능동적인 중장기 ALM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할인율 현실화에 따른 시가 기준 재무제표(PAP)상의 자본 감소분은 할인율 차이로 인한 임시 계정을 신설하여 처리한다면 보험사들의 자본 감소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재무회계상 대다수 회사가 신계약 CSM을 성과 지표로 삼고 있는데, 할인율로 인해 과대 평가되었던 신계약 CSM이 정상화됨으로써 과열된 영업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회사의 경영진이 지표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35년 이후에는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부채 평가 할인율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보험사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적응 과정이 수월해짐으로써 감독당국의 정책 목표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